

올림픽파크 포레온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



■ 일정 및 신청방법 안내

| 구분 | 입주자모집공고 | 특별공급 청약 | 당첨자 발표 | 서류제출 | 계약기간 |
|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정 | 2022.11.25(금) | 2022.12.05(월) | 2022.12.15(목) | 2022.12.17(토) ~ 2022.12.31(토) | 2023.01.03(화) ~ 2023.01.17(화) |
| 방법 | 올림픽파크 포레온 홈페이지 |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인터넷 청약(09:00~17:30) (PC 및 스마트폰 앱) |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개별조회 (로그인 후 개별조회) |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본주택 (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-1번지) | |

■ 유형별 ·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(85㎡ 이하)

| 구분 | 29A | 39A | 49A | 계 |
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|
|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| - | 34 | 28 | 62 |

■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|--|
| 대상자 | <p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 및 인천광역시)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.)</p> <p>※ 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- 세대주일 것 -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<p>※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(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)</p> <p>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.</p> <p>※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</p> <p>※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)</p> |
| 당첨자 선정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(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) 거주자가 우선합니다.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. -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「청약가점 산정기준」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)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합니다. -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,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. -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
| 특별공급 유의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- 소형·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,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·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•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,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. |